

서울경찰전문학원 형사소송법 GS 백거성 교수님 가답안 및 해설

1. ①

해설> ② 형소법은 내사규정이 없다. ③ 우리 형소법은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좌석은 함께 한다. ④ 공소제기가 있으면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바뀐다.

2. ③

해설>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이다.

3. ③

해설> ③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한 것은 압수처분이지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.

4. ④

해설> ①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. ②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가능하다. ③ 항고가 아닌 준항고이다.

5. ②

해설> ㉠㉡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.

6. ④

해설> ①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않는다. ② 배제결정한다. (규칙 제139조 제4항) ③ 법령위반 또는 상당하지 않을 때 이의신청가능.

7. ③

해설> ①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면 기소는 유효 ② 수회간통 했다는 기재로는 공소사실 불특정. ④ 교사, 방조는 정범의 사실도 기재해야함.

8. ①

해설> ㉠은 축소사실의 심판의무와 관련하여 축소사실을 유죄인정하여야 하므로 “인정할 수 있다”는 지문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문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변경의 필요여부를 물어본 것이므로 변경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한다.

9. ②

해설>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. ③ 동거인, 고용주는 제외 ④ 의견진술은 수사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신문 후에 가능.

10. ②

해설> ①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가능. ③ 기소 전후 불문한다. ④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과 달리 증인신문청구기각결정은 항고 불가.

11. ②

해설> ㉡피퇴정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배제불가

서울경찰전문학원 형사소송법 GS 백거성 교수님 가답안 및 해설

12. ③

해설> ㉠ 실질적으로 사전청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이므로 영장발부는 위법하지 않다. ㉡ 항고, 준항고 모두 불가 ㉢ 이중구속으로써 적법 ㉣ 형소법 제88조에 규정된 사후청문절차는 위반했더라도 구속영장효력에 영향없다.

13. ④

해설> ④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라도 위법하지 않음에 주의!!

14. ③

해설> ③ 원본(보이스펜)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사본(재녹음테이프)에 부동의했더라도 녹취록과의 일치가 확인되고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있다.

15. ②

해설> 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㉡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함.

16. ①

해설> ㉦ 구속적부심조서는 제315조 제3호 해당 ㉢ 체포적부심의 청구시에는 피의자보석 불허 ㉣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불가

17. ③

해설> ㉠ 교통사고사망자의 부모도 피해자에 포함. ㉢ 신청자가 수인이면 수를 제한가능.

18. ④

해설>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.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인정.

19. ④

해설> ④ 변호인만이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견을 번복불가

20. ④

해설> ④ 임의성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자백의 임의성 인정된다.